



제429회국회(정기회)
제6차기획재정위원회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3653호)

2025. 11.

기 획 재 정 위 원 회

전문위원 정지은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3
1. 자기주식 취득 및 매각에 따른 이익을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 으로서 의제배당 및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오기형의원안)	3

I. 개요

1. 오기형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3653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오기형의원 등 10인
- (2) 제 안 일 : 2025. 10. 21.
- (3) 회 부 일 : 2025. 10. 2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실질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으며, 기업회계기준에도 이와 같이 반영되어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 이와 같은 취지가 불명확하여 실무상 혼선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법인이 다른 주권발행법인에게 해당 주식을 양도하고 대가로 지급받은 금액 중 당초 해당 주식의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거래소를 통해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도록 명시하고자 함(안 제16조제1항제1호).

또한 자기주식 처분손익은 그 본질이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 처분으로 인한 손익이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자 함(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 제20조

제3호).

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오기형의원이 대표발의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3652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II. 주요 내용별 검토

1. 자기주식 취득 및 매각에 따른 이익을 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으로서 의제배당 및 익금불산입 대상에 포함(오기형의원안)

현 행	개정안
□ 의제배당(제16조) ○ 정의: 다음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 받은 금액으로 간주 ○ 유형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법인의 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이나 출자에 전입함으로써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등의 가액 ③ 자기주식 또는 자기출자지분에 대한 불균등증자 시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등의 가액 ④ 법인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서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이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의 취득으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추가 ○ 정의: (현행과 같음) ○ 유형 ①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u>자기주식의 취득(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 제외)</u>,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⑤ 피합병법인의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합병대가가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⑥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제17조) ○ 익금불산입 대상: ① 주식발행액면초과액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차익 ③ 주식의 포괄적 이전차익 ④ 감자차익 <신설> ⑤ 합병차익 ⑥ 분할차익 □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제20조) ○ 손금불산입 대상: ① 결산을 확정할 때 잉여금의 처분을 손비로 계상한 금액 ② 주식할인발행차금	⑤ (현행과 같음) ⑥ (현행과 같음) □ 자기주식처분이익 추가 ○ 익금불산입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⑤ 자기주식처분이익: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 ⑥ 합병차익 ⑦ 분할차익 □ 자기주식처분손실 추가 ○ 익금불산입 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현 행	개정안
<신 설>	③ 자기주식처분손실: 자기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처분하여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 ○ 시행일: 2026. 1. 1. ○ 적용례: (일반적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익금 또는 손금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

* 오기형의원안 2025. 10. 21. 발의(의안번호 13653)

- ☐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손익거래가 아닌 자본거래로 보아 의제배당 대상에 자기주식의 취득(거래소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으로 인하여 주주 또는 출자자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하는 한편,
- 현행법상 익금에 산입되는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손금에 산입되는 자기주식처분손실을 각각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및 자본거래 등으로 인한 손비의 손금불산입 대상에 추가하려는 것임.
- ☐ 자기주식이란 회사가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회사 자신이 취득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률적 상태를 의미하는 명칭임.¹⁾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5월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1) 한국상장사협의회, “상장회사 자기주식 취득·처분 및 이익소각 실무해설”, 월간세무회계경영저널, 안세회계법인, 2020

92개 기업집단 중 총수가 있는 81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090개사)의 주식소유현황을 분석하여 공개하였는데, 자기주식이 있는 회사는 79개 집단 414개사이고 자기주식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는 40개 집단 71개사에 달하였음.

[자기주식 비율이 5% 이상인 상장회사 목록]

(단위: %)

연번	집단	회사명	자사주 비율	연번	집단	회사명	자사주 비율
1	삼성	(주)에스원	11.0	36	에이치디씨	에이치디씨(주)	16.3
2		(주)제일기획	12.0	37		에이치디씨랩스(주)	11.5
3		(주)호텔신라	5.4	38		에이치디씨현대아파트(주)	18.8
4		삼성생명보험(주)	10.2	39	케이씨씨	(주)케이씨씨	17.2
5		삼성카드(주)	7.9	40		(주)케이씨씨건설	6.8
6		삼성화재해상보험(주)	13.4	41	DB	(주)디비아이엔씨	5.0
7	에스케이	에스케이(주)	24.6	42		(주)디비하이텍	8.9
8		에스케이네트웍스(주)	12.4	43		디비손해보험(주)	15.2
9		에스케이씨(주)	10.0	44	엘엑스	(주)엘엑스인터내셔널	7.2
10		에스케이하이닉스(주)	5.2	45	다우키움	(주)사람인	10.3
11		인크로스(주)	6.0	46		한국정보인증(주)	5.9
12	엘지	(주)엘지생활건강	5.4	47	금호석유화학	금호석유화학(주)	12.4
13	롯데	롯데지주(주)	32.3	48	태영	(주)티와이홀딩스	29.2
14	한화	(주)한화	5.9	49	삼천리	(주)삼천리	15.6
15		한화생명보험(주)	13.5	50	KG	(주)케이지모빌리언스	5.2
16	HD현대	에이치디현대(주)	10.5	51		케이지에코솔루션(주)	11.9
17	지에스	삼양통상(주)	12.0	52	태광	대 한화섬(주)	18.6
18		휴젤(주)	14.6	53		태 광산업(주)	24.4
19	신세계	(주)신세계	9.1	54	크래프톤	(주)크래프톤	6.6
20		(주)신세계아이앤씨	6.0	55	동국제강	인터지스(주)	5.2
21	씨제이	(주)씨제이이엔엠	5.4	56	삼양	(주)삼양사	6.1
22		씨제이(주)	6.0	57		(주)삼양홀딩스	12.7
23		씨제이대한통운(주)	12.6	58	유진	(주)동양	20.5
24	엘에스	(주)엘에스	15.1	59		유진기업(주)	11.4
25		(주)이원	15.7	60		유진투자증권(주)	5.2
26		(주)인베니	28.7	61	대신	대신증권(주)	20.6
27		엘에스증권(주)	7.6	62	하이트진로	하트진로홀딩스(주)	7.8
28	두산	(주)두산	16.7	63	DN	(주)디엔오토모티브	11.5
29	네이버	네이버(주)	5.8	64	현대해상화재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주)	12.3
30	미래에셋	미래에셋생명보험(주)	34.2	65	파라다이스	(주)파라다이스	5.9
31		미래에셋증권(주)	18.9	66	아이에스지주	인선이엔티(주)	5.7
32	현대백화점	(주)현대홈쇼핑	6.6	67	한솔	한솔아이원스(주)	5.1

연번	집단	회사명	자사주 비율	연번	집단	회사명	자사주 비율
33	영풍	(주)영풍	6.5	68	사조	(주)푸른저축은행	22.3
34		고려아연(주)	12.2	69	원익	(주)원익피앤이	6.3
35	하림	(주)하림지주	13.2	70	영원	(주)영원무역홀딩스	14.9
-	-	-	-	71		(주)푸드웰	5.7

주: 2025년 5월 1일 기준, 1번~44번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2025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주식소유현황’, 2025. 9.

□ 한편, 현행 세법은 자기주식의 처분은 손익거래로 보고, 자기주식의 소각은 자본거래로 보고 있음.

따라서 개인주주의 경우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 목적에 따라 과세방식 및 세부담 등이 달라지는데, 법인이 자기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이를 의제배당으로 보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고, 소각 외 목적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소득으로 봄.

배당소득으로 과세하는 경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한 금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에 합산되어 누진세율로 과세되는 한편, 양도소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거나 장외거래 시에만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등 과세범위, 과세시기, 세율 등의 차이가 존재함.

반면, 법인주주의 경우 순자산증가설에 따라 법인세가 과세되므로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법인주주의 세부담은 개인주주와 달리 그 취득목적과 관계 없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음.²⁾

2) 다만, 법인이 자기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주주 입장에서 해당 주식의 양도차익은 의제배당으로 과세하므로 「법인세법」 제18조의2에 따른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됨.

이와 관련하여 자기주식 소각에 따른 의제배당액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적용대상에 해당한다는 국세청 예규(서면-2025-법인-3283(법인세과-1428))가 있지만, 기획재정부는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법인주주의 양도차익이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은 수입배당금액’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 사실판단 사항으로 보인다는 입장임.

「법인세법」

제18조의2(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제29조에 따라 고유목적사업준비

특정 법인이 자기주식의 소각을 목적으로 법인주주로부터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법인주주 입장에서 주식 양도차익은 「법인세법」 제16조제1항제1호3)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여 익금에 산입되고, 소각 외의 목적의 경우에는 해당 주식의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금액에 해당하므로 익금에, 해당 주식의 장부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호에 따른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에 해당하므로 손금에 산입됨.⁴⁾

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해당 법인이 출자한 다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피출자법인”이라 한다)으로부터 받은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과 제16조에 따라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조 및 제76조의14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뺀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이 0보다 작은 경우에는 없는 것으로 본다.

1. 피출자법인 별로 수입배당금액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익금불산입률을 곱한 금액의 합계액

피출자법인에 대한 출자비율	익금불산입률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20퍼센트 이상 50퍼센트 미만	80퍼센트
20퍼센트 미만	30퍼센트

2.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가 있는 경우에는 차입금의 이자 중 제1호에 따른 익금불산입률 및 피출자법인에 출자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배당금액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8. 자본의 감소로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한 재산가액이 당초 주식등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금액 등 피출자법인의 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지 아니한 수입배당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배당금액

<국세청 예규>

주식발행법인이 법인주주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발행법인의 주식(“자기주식”)을 매입하여 「상법」 제343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자기주식을 소각하여 발생하는 의제배당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2항 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 제5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같은 법 제18조의2 제1항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서면-2025-법인-3283)

3) 「법인세법」

제16조(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1. 주식의 소각, 자본의 감소, 사원의 퇴사·탈퇴 또는 출자의 감소로 인하여 주주등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해당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또한, 현행법상 자기주식을 처분하는 주권발행법인의 입장에서 자기
주식 양도가액은 익금에 산입되고, 처분한 자기주식의 장부가액은
손금에 산입되어 자기주식처분손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짐.⁵⁾⁶⁾

반면, 자기주식의 소각은 발행된 주식이 영구히 소멸되는 전형적인
자본거래에 해당하므로 소각에 따른 손익에 대해서는 과세효과가
발생하지 않음.⁷⁾⁸⁾

□ 개정안은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에 따른 이익을 자본거래로 보아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법인의 자기주식 취득에 따른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5)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의2. 자기주식(합병법인이 합병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보유하던 합병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게 된
경우를 포함한다)의 양도금액. 이 경우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주식매
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당시의 시가로 계산
한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6) 「법인세법 통칙」

15-11…7 【자기주식 처분손익의 처리】

①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생긴 손익은 각 사업연도 소득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매각함으로써 생긴 매각차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한다. 다만, 고
가매입 또는 저가양도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 본문을 적용할 때에 자기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주식의 취득목적에 따라 매각목적
자기주식과 소각목적 자기주식으로 구분하여 영 제75조를 적용한다.

7)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4. 감자차익(減資差益): 자본감소의 경우로서 그 감소액이 주식의 소각, 주금(株金)의 반환에 든
금액과 결손의 보전(補填)에 충당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의 그 초과금액

8) 임한솔,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2023

법인주주의 이익을 의제배당으로 규정하는 한편, 자본거래로 인한
익금불산입 및 손금불산입 대상에 자기주식처분이익과 자기주식처
분손실을 각각 포함하려는 것임.

다만, 법인주주가 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아닌 일반적인 주
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간주하려는 것임.

□ 개정안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타당성이 인정되는 측면이 있음.

첫째, 개정안에 따르면 자사주의 취득 목적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과세가 이루어지므로 현행 세법 하에서 발생하는 소득 구분의 어
려움을 해결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기주식의 취득목적은 가변적이고 현행 「상법」은 자기주식의
소각기한을 정하고 있지 않아 자기주식 매도에 따른 소득 구분에
대한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판례는 주식의 매도가 자산거래인 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또는
자본거래인 주식소각이나 자본 환급에 해당하는지는 법률행위 해
석의 문제로서 거래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사를 기초로 판단해야
하지만, 실질과세의 원칙상 단순히 계약서의 내용이나 형식에만 의
존할 것이 아니라, 당사자의 의사와 계약체결의 경위, 대금의 결정
방법, 거래의 경과 등 거래의 전체 과정을 실질적으로 파악하여 판
단해야 한다는 입장임.⁹⁾

9)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6두49525 판결 등

법인주주의 경우 손익거래와 자본거래 간 세부담이 동일하므로 소득구분의 실익이 적지만, 개인주주 입장에서는 법인의 자사주 취득 목적에 따라 세율, 과세표준 등이 달라져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으므로 명확하게 과세기준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¹⁰⁾

둘째,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회계기준은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보고 관련 거래를 자본거래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회계와 세법 간 일관성을 도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기업이 자기주식을 재취득하는 경우에는 자본에서 차감하고, 자기주식을 매입, 매도, 발행, 소각하는 경우의 손익은 당기손익으로 인식하지 않음.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시 자본조정의 차감 항목으로 처리하고, 자기주식 처분 시 이익이 발생하면 자본잉여금 항목의 자기주식처분이익으로 처리하며,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자기주식처분이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나머지는 자본조정 항목의 자기주식처분손실로 처리함.

셋째, 거래소에서 주식을 매도하고자 하는 법인주주는 임의로 매수자를 선택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법인주주가 거래소를 통하여 주식을 매각하려는데 우연히 그 매수인이 주권발행법인인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아닌 일반적인 주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으로

10) 다만, 통상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배당소득보다 저율과세되는 양도소득이 납세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논의할 필요가 있음.

간주하는 개정안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

참고로 기획재정부 예규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증권거래소를 통해 일반적인 매매방법으로 불특정다수로부터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는 경우에는 의제배당이 아닌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는 입장임.¹¹⁾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측면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자사주의 취득 및 처분을 자본거래로 보기 위해서는 「상법」 개정이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법인이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사원에게 출자를 환급하는 것과 같고, 자기주식처분손익은 주식할인발행차금 또는 주식발행초과금과 같으므로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을 신주발행과 동일하게 자본거래로 간주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데,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상법」 규정이 자사주 매각 시 신주발행 절차를 명시적으로 준용하지 않고 있어 자사주 매각의 실질이 신주발행과 같다고 보기 곤란한 측면이 있음.

「상법」 제416조 및 제418조에 따르면 회사가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신주의 종류와 수,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등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음.¹²⁾

11)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85, 2020. 3. 19.

12) 「상법」

제416조(발행사항의 결정) 회사가 그 성립 후에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다만,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거나 정관으로 주주

또한, 배정기준일 공고(제418조), 신주인수권자에 대한 최고 등의 통지(제419조), 청약(제420조)과 배정, 납입(제421조) 등의 절차를 거치고, 신주발행의 무효의 소(제429조), 신주발행무효판결의 효력(제431조), 무효판결 확정 시 주주에의 환급(제432조) 등 구체적인 내용이 「상법」에 규정되어 있음.

이와 달리 자기주식 처분의 경우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등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¹³⁾, 처분의 요건, 절차 및 그 무효를 다투는 소 등에 관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신주발행에 관한 규정도 준용하고 있지 않음.¹⁴⁾

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2. 신주의 발행가액과 납입기일

2의2. 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신주의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하는 금액

3. 신주의 인수방법

4.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그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5. 주주가 가지는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는 것에 관한 사항

6. 주주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한다는 것과 그 청구기간

제418조(신주인수권의 내용 및 배정일의 지정·공고) ①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회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③ 회사는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가 제1항의 권리를 가진다는 뜻과 신주인수권을 양도할 수 있을 경우에는 그 뜻을 그 날의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날이 제354조제1항의 기간 중인 때에는 그 기간의 초일의 2주간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회사는 제416조제1호, 제2호, 제2호의 2,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13) 「상법」

제342조(자기주식의 처분) 회사가 보유하는 자기의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서 정관에 규정이 없는 것은 이사회가 결정한다.

1. 처분할 주식의 종류와 수

2. 처분할 주식의 처분가액과 납입기일

3. 주식을 처분할 상대방 및 처분방법

14)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7. 7.자 2015카합80597 결정

참고로 상법 개정과정에서 2006년 입법예고 되었던 ‘상법 중 회사법개정법률안’에서는 자기주식의 처분에 관하여 주주의 신주인수권이나 신주발행 무효의 소 등 신주발행에 관한 조문을 준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으나, 효율적인 재무관리에 장애가 된다는 등 재계의 반발로 인하여 2008년 10월 21일 정부가 제출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제출, 의안번호 1801566)」에서는 최종적으로 해당 규정을 삭제하였음.¹⁵⁾

둘째, 최근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개정안이 입법화될 경우 현재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매각하여 얻는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이전에 자기주식의 매각을 유도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

또한, 자기주식의 처분가격과 무관하게 자기주식처분이익에 대하여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게 되므로 현재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거나 취득 예정인 법인이 막대한 시세차익을 누리더라도 납세의무가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따르면 안 제17조제1항제4호의2와 제20조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과세표준 신고분부터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2025년에 이뤄진 자기주식 처분까지도 모두 자본거래로 인정하겠다는 내용에 해당함.

15) 임한술, ‘자기주식 취득과 처분에 관한 현행 과세체계 평가 및 입법적 개선방안 검토’, 2023

문 의 처
02)6788-5154